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및 환경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면서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을 환경부로 재배정하고, 환경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재배정하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4급 1명)을 직급 하향(4급 또는 5급) 조정하고, 환경부에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난개발지역 친환경 복원 및 개발을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입야생동물의 검역시행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 홍수취약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정책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환경건강연구부·기후대기연구부·물환경연구부·환경자원연구부·환경기반연구부를 기후탄소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물환경연구부·환경건강연구부·환경자원연구부로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편제하는 등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1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23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환경 분야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협력사업과 교류 활동에 관한 사항

24.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5. 환경 분야 국제협약·국제협정의 체결 및 이행 관련 업무와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26.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직무)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

· 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감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국가환경연구사업의 목표설정 및 기획, 주요업무계획 수립, 국제협력 및 홍보,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3. 기후변화·모빌리티환경·통합환경관리·국토환경관리 등 기후탄소 분야 관련 연구
4. 대기환경·대기배출원 관리·대기질예보 등 대기 분야 관련 연구
5. 유역별 통합 물환경관리, 수자원 및 물이용 등 물환경 분야 관련 연구
6.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생활환경 등 환경건강 분야 관련 연구
7. 폐기물의 처리·자원화·순환이용 및 토양지하수 등 환경자원 분야 관련 연구

제17조 중 “환경건강연구부·기후대기연구부·물환경연구부·환경자원연구부 및 환경기반연구부”를 “기후탄소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물환경연구부·환경건강연구부 및 환경자원연구부”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기후탄소연구부) ① 기후탄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측정 및 조사·연구
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후·대기 통합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4.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5. 모빌리티 배출가스·온실가스의 무공해화 및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6. 모빌리티 및 저공해엔진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
7. 최적가용기법과 기준서 마련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후변화·국토이용 및 환경오염에 의한 국토환경변화 예측·추적·평가에 관한 연구
9.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사·연구
10.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연구
11.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관한 사항
12. 환경측정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정도(精度)검사 및 환경측정 분석기관의 정도관리
13. 환경시험·검사 기관의 지정·인정 및 관리제도 운영
14. 환경측정 분석 결과의 국가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1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9조(대기환경연구부) ① 대기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및 대기오염물질의 예보제·경보제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 중 입자상(粒子狀), 가스상, 악취 및 산성강하물질(酸性降下物)

質)의 측정·분석에 관한 업무

3. 대기오염 측정망 및 국가대기환경데이터센터 운영·관리
4.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배출특성 및 방지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5. 황사 및 동북아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현상 규명, 예측 및 이와 관련한 국제공동 조사·연구
6. 대기오염 및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7. 환경위성 탑재체(搭載體: 정찰, 통신, 지구 탐사, 대기질 감시, 기상 예보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성본체에 실은 장비를 말한다) 개발 및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기후변화 유발물질 측정
8.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관리
9. 대기오염물질 예보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공공수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2.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3.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연구
4. 물환경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5.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6. 전국 오염원정보 조사 및 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산정·관리

7. 수질예보, 수질오염사고 대응 수질예측 및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목표수질 등 관련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9. 국가 물관리통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10. 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11.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질변화 예측기법 연구

12. 먹는물 관련 제반 기준 및 오염사고 방지·대응에 관한 조사·연구

13. 미생물 오염 방지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연구

제21조(환경건강연구부)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건강영향 조사·연구
2.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 시험·연구
3. 화학물질 시험 기관 평가·시험방법 관리 및 나노물질 등 국제적 관심 물질의 안전성 평가
4. 허가·제한·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연구
5.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6.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인구집단

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7. 화학물질의 생성, 분해, 이동 등의 조사 및 오염평가 등 제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8.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의 관리기법에 대한 조사·연구
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및 의료상담·지원
10.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11. 인체·생물 등 환경시료(試料)의 수집·보관 및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운영
12. 생활환경 유해인자의 특성, 영향, 저감 및 관리방안 연구
13. 생활환경 중 실내공기 오염원 및 실내공기 오염물질 조사·연구
14. 석면 및 석면대체물질 조사연구 및 석면환경센터 운영
15. 소음·진동 특성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제22조(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자원의 발생특성 및 순환이용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4.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바젤협약 등 폐기물 분야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6.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의 제조 및 이용 기술 연구

7. 소각시설의 폐열회수·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매립가스의 효율적인 포집 등 폐자원 에너지화에 관한 조사·연구
8.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연구
9. 토양·지하수 수질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토양지하수 연계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4급**”으로 한다.

제60조제7항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629”를 “632”로, 일반직 계 “623”을 “626”으로, 고위공무원단 “15”를 “16”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588”을 “590”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820”을 각각 “1,823”으로, 고위공무원단 “10”을 “9”로, 3급 또는 4급 이하 “1,801”을 “1,805”로 한다.

별표 8 제7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7항 및 별표 8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 ----- ----- ----- 2명-----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2명-----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③ ----- -----.
1. ~ 21. (생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삭제	
<신설>	23. 환경 분야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협력사업과 교류 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4.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5. 환경 분야 국제협약·국제협정의 체결 및 이행 관련 업무와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신설>	26.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현행	개정안
제9조(기후탄소정책실) ①·② (생략)	제9조(기후탄소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환경 관련 각종 국제회의 개최·참가의 지원 및 해외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삭제>
9. 환경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삭제>
10.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 총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삭제>
11.·12. (생략)	11.·12. (현행과 같음)
13. 녹색기후기금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와의 국제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삭제>
14. ~ 19. (생략)	14. ~ 19. (현행과 같음)
20.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21. ~ 46. (생략)	21. ~ 46. (현행과 같음)
제15조(직무)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다음 사	제15조(직무)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다음 사

무를 관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감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국가환경연구사업의 목표설정 및 기획, 주요업무계획 수립, 국제협력 및 홍보,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 분석 3.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등 환경건강 분야 관련 연구 4. 기후변화·대기환경·대기배출원 관리 등 기후대기 분야 관련 연구 5.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수환경공학 및 수질환경·수질통합관리 등 물환경 분야 관련 연구 6. 폐기물의 처리·자원화 및 자연생태 등 환경자원 분야 관련 연구 7. 생활환경·먹는물·토양지하수·환경측정 분석 등 환경기반 분야 관련 연구	무를 관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감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국가환경연구사업의 목표설정 및 기획, 주요업무계획 수립, 국제협력 및 홍보,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 분석 3. 기후변화·모빌리티환경·통합환경관리·국토환경관리 등 기후탄소 분야 관련 연구 4. 대기환경·대기배출원 관리·대기질예보 등 대기 분야 관련 연구 5. 유역별 통합 물환경관리, 수자원 및 물이용 등 물환경 분야 관련 연구 6.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생활환경 등 환경건강 분야 관련 연구 7. 폐기물의 처리·자원화·순환이용 및 토양지하수 등 환경자원 분야 관련 연구	8.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및 저공해엔진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 9.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제17조(하부조직)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건강연구부·기후대기연구부·물환경연구부·환경자원연구부 및 환경기반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제17조(하부조직) ----- -- 기후탄소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물환경연구부·환경건강연구부 및 환경자원연구부----- ----- ----- ----- ----- ----- ----- ----- ----- ----- --. 제18조(기후탄소연구부) ① 기후탄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측정 및 조사·
--	--	--	---

연구

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후·대기 통합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4.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5. 모빌리티 배출가스·온실가스의 무공해화 및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6. 모빌리티 및 저공해엔진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
7. 최적가용기법과 기준서 마련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후변화·국토이용 및 환경오염에 의한 국토환경변화 예측·추적·평가에 관한 연구
9.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사·연구
10.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연구
11.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관한 사항
12. 환경측정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정도(精度)검사 및 환

- 제19조(환경건강연구부)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건강영향 조사·연구
 2.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 시험·연구
 3. 화학물질 시험 기관 평가·시험방법 관리 및 나노물질 등 국제적 관심 물질의 안전성 평가
 4. 허가·제한·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연구

- 경측정 분석기관의 정도관리
13. 환경시험·검사 기관의 지정·인정 및 관리제도 운영
 14. 환경측정 분석 결과의 국가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1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19조(대기환경연구부) ① 대기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및 대기오염물질의 예보제·경보제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 중 입자상(粒子狀), 가스상, 악취 및 산성강하물질(酸性降下物質)의 측정·분석에 관한 업무
 3. 대기오염 측정망 및 국가대기환경데이터센터 운영·관리
 4.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배출특성 및 방지기술에 관한 조

5. 삭 제	사·연구
6.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5. 황사 및 동북아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현상 규명, 예측 및 이와 관련한 국제 공동 조사·연구
7.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6. 대기오염 및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8. 삭 제	7. 환경위성 탑재체(搭載體: 정찰, 통신, 지구 탐사, 대기질 감시, 기상예보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성본체에 실은 장비를 말한다) 개발 및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기후변화 유발물질 측정
9. 화학물질의 생성, 분해, 이동 등의 조사 및 오염평가 등 제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8.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관리
10. 11. 삭 제	9. 대기오염물질 예보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의 관리기법에 대한 조사·연구	
13. ~ 15. 삭 제	
1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및 의료상담·지원	
17.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18.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0조(기후대기연구부) ① 기후	제20조(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

대기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및 대기오염물질의 예보제·경보제에 관한 조사·연구	1.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공공수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2. 대기 중 입자상(粒子狀), 가스상, 악취 및 산성강하물질(酸性降下物質)의 측정·분석에 관한 업무	2.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 측정망 및 국가대기환경데이터센터 운영·관리	3.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연구
4.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배출 특성 및 방지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4. 물환경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5. 황사 및 동북아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현상 규명, 예측 및 이와 관련한 국제 공동 조사·연구	5.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후·대기 통합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6. 전국 오염원정보 조사 및 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산정·관리
7. 대기오염 및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7. 수질예보, 수질오염사고 대응 수질예측 및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유발	8.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목표수질 등 관련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9. 국가 물관리통합정보망의 구

물질에 대한 측정 및 조사·연구 9.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11.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 운영 12. 환경위성 탑재체(搭載體: 정찰, 통신, 지구 탐사, 대기질 감시, 기상예보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성본체에 실은 장비를 말한다) 개발 및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기후변화 유발물질 측정 13.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연구 14.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관리 15. 대기오염물질 예보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 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측 및 운영 10. 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11.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질변화 예측기법 연구 12. 먹는물 관련 제반 기준 및 오염사고 방지·대응에 관한 조사·연구 13. 미생물 오염 방지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연구 제21조(환경건강연구부)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공공수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2.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3.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연구 4. 물환경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5.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6. 전국 오염원정보 조사 및 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산정·관리 7. 수질예보, 수질오염사고 대응 수질예측 및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목표수질 등 관련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9.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10. 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된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건강영향 조사·연구 2.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 시험·연구 3. 화학물질 시험 기관 평가·시험방법 관리 및 나노물질 등 국제적 관심 물질의 안전성 평가 4. 허가·제한·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연구 5.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6.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7. 화학물질의 생성, 분해, 이동 등의 조사 및 오염평가 등 제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8.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의 관리 기법에 대한 조사·연구
--	--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및 의료상담·지원
11. 중장기 유역환경관리를 위한 수질변화 예측기법 연구	10.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11. 인체·생물 등 환경시료(試料)의 수집·보관 및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운영
	12. 생활환경 유해인자의 특성, 영향, 저감 및 관리방안 연구
	13. 생활환경 중 실내공기 오염원 및 실내공기 오염물질 조사·연구
	14. 석면 및 석면대체물질 조사 연구 및 석면환경센터 운영
	15. 소음·진동 특성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제22조(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제22조(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자원의 발생특성 및 순환이용에 관한 연구	1. 폐자원의 발생특성 및 순환이용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4.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 등에 관한 연구	4.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바젤협약 등 폐기물 분야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5. 바젤협약 등 폐기물 분야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6.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의 제조 및 이용 기술 연구	6.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의 제조 및 이용 기술 연구
7. 소각시설의 폐열회수·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매립가스의 효율적인 포집 등 폐자원 에너지화에 관한 조사·연구	7. 소각시설의 폐열회수·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매립가스의 효율적인 포집 등 폐자원 에너지화에 관한 조사·연구
8.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연구	8.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연구
9.·10. 삭제	9. 토양·지하수 수질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연구	10. 토양지하수 연계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12. 삭제	
13. 환경시료(試料)의 수집·보관 및 환경시료 은행의 운영	
14. 도시생태계 조성 및 복원에 관한 연구	
15. 공간환경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 지속 가능한 개발 지원에 관한 연구	

제23조(환경기반연구부) ①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환경 유해인자의 특성, 영향, 저감 및 관리방안 연구
2. 생활환경 중 실내공기 오염원 및 실내공기 오염물질 조사·연구
3. 석면 및 석면대체물질 조사연구 및 석면환경센터 운영
4. 소음·진동 특성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5. 먹는물의 미생물 기준 등 제반 기준 및 오염사고 방지·대응에 관한 조사·연구
6. 미생물 오염 방지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연구
7. 토양·지하수 수질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 토양지하수 연계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9. 환경측정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정도(精度)검사 및 환

<삭 제>

경측정 분석기관의 정도관리

10.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관한 사항
11. 환경시험·검사 기관의 지정·인정 및 관리제도 운영
12. 환경측정 분석 결과의 국가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제24조(교통환경연구소)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저공해엔진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교통환경연구소를 둔다.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물환경연구소) 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계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물환경연구소를 둔다.

<삭 제>

<삭 제>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원장) ① (생 략)	제33조(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4급-----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한시정원) ① ~ ⑤ (생 략)	제60조(한시정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삭 제>
⑦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며, 별표 8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629</u>	• <u>632</u>	+3
•	•	•	
•	•	•	
일반직 계	<u>623</u>	<u>626</u>	+3
고위공무원단	<u>15</u>	<u>16</u>	+1
3급 또는 4급 이하	<u>588</u>	<u>590</u>	+2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820</u>	<u>1,823</u>	+3
일반직 계	<u>1,820</u>	<u>1,823</u>	+3
고위공무원단	<u>10</u>	<u>9</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801</u>	<u>1,805</u>	+4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5